



2016 헌마 738

의견서

청 구 인 권가현외 2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이해관계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욱, 장준영, 강현정,
박규홍, 남한결, 이민영,
최유리

헌법재판소 귀중

전화(직통) : 316-4059(변호사 강신욱), 316-4080(변호사 강현정), 316-1766 (변호사 남한결)

e-mail : sokang@shinkim.com (변호사 강신욱), hjkang@shinkim.com (변호사 강현정),

hknam@shinkim.com (변호사 남한결)

팩시밀리 : 756-6226



법무법인 세종
SHIN&KIM

<목 차>

1. 심판의 대상	1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2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2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3
가. 기본권의 제한	3
나.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4
다.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및 위임입법 한계 일탈	4
3. 적법요건(법적 관련성)의 흠결	5
가. 자기관련성 흠결	5
나. 현재성 흠결	8
다. 소결	9
4. 본안에 관한 청구인들 주장의 부당성	9
가. 기본권 제한 여부	9
(1)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 여부	10
(2)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여부 ...	14
(3) 청소년의 알 권리 제한 여부	17
(4) 부모의 교육권 제한 여부	18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의 부당성	20
(1) 수단의 적합성	21
(2) 침해의 최소성	23
(가) 청소년의 불법·유해정보 노출의 심각성 및 규제의 필요성 ..	24
(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존 규제의 한계점	26
(다) 차단고지 외 다른 실효성 확보방안	28
(라) 소결	29
(3) 법익의 균형성	29
다.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의 부당성	33
(1)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주장의 부당성	33
(2)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의 부당성	37
5. 결론	40



의견서

사 건 2017 헌마 738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7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가 현 외 2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 12761 호로 개정된 것) 제 32 조의 7 과 동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 26191 호로 개정된 것) 제 37 조의 8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라 하고,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합니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7

제 32 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7 조의 8

제 37 조의 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 32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 제 17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 21 조 알 권리 및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령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 기본권의 제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차단수단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합니다)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 44 조의 7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음란정보(이하 ‘음란정보’ 또는 ‘불법음란정보’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합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하여 알 권리를 제한하며, 차단수단 제공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나.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의한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이는 전근대적·국가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이며 보안위험이 있으므로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임의규정 기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가 큰 수단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강제적으로 차단수단을 사용해야 함으로써 받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다.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및 위임입법 한계 일탈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7 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 사업자”라 합니다)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차단수단 제공의무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서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7 이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 37 조의 8 제 2 항에서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3. 적법요건(법적 관련성)의 흠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 모두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청구인 2, 청구인 3의 경우 자기관련성 요건과 현재성 요건을 흠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자기관련성 흠결



헌법재판소법 제 68 조 제 1 항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 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 헌마 233 결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 3 자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하여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5 헌마 124 결정)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 3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작용이 그 제 3 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 헌마 233 결정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 3 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는 ① 문제된 법률의 입법목적, ② 실질적인 규율대상, ③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 3 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④ 규범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 헌마 133 결정 등).

그런데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수규자는 이동통신 사업자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에서 열거한



①~④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현실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구된 것입니다. 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문제된 법률의 입법목적). 다음으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의무부과의 대상은 이동통신 사업자이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그 의무 이행의 점검도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도 이동통신 사업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실질적인 규율대상). 물론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일률적으로 차단수단이 제공되므로 이로 인하여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지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해당할 뿐인 반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특정한 행위(차단수단의 제공)를 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만큼 이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마지막으로, 만일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의한 의무 이행이 이동통신 사업자의 영업에 부담이 되는 경우 그 이동통신 사업자가 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근거도 없습니다(규범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

그렇다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의무부과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구인들은 위 조항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현재성 흠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4 헌마 229 결정).

청구인 2와 청구인 3의 경우 본인 또는 그 자녀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도입 이후 스마트폰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까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청구인 2와 청구인 3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추후 스마트폰 구입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변경을 통한 위 조항에



따른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청구인 2, 청구인 3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인 2, 청구인 3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또한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 전원에 대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4. 본안에 관한 청구인들 주장의 부당성

설령 청구인들의 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합니다.

가. 기본권 제한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청소년의 알 권리 및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 여부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따라 ① 이동통신 사업자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②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하게 되므로 청소년인 청구인 1, 청구인 2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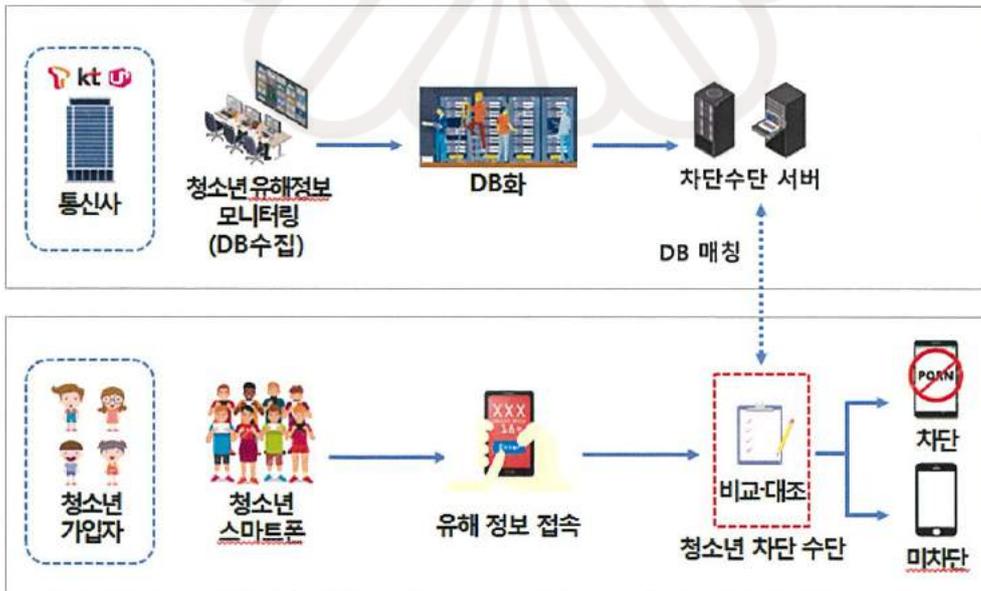
(나) 이동통신 사업자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단수단은 청소년이 접속하는 사이트 주소와 불법정보로 분류된 사이트 주소 등의 매칭으로 자동적, 기계적으로 작동되고, 차단수단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직접 청소년이 검색한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즉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차단수단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이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접속 사이트와 청소년 유해정보 DB를 매칭함으로써 차단수단 서버 단계에서 자동적·기계적으로 필터링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청소년이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차단수단 서버는 DB 매칭만을 수행할 뿐

유해차단 내역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부모 등 누구에게도 이러한 내역을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이동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차단수단을 제공하고 그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차적으로 계약체결 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이후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 확인할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닐 경우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매일 통지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도 단순히 해당 차단수단(스마트폰 내 설치된 앱)의 작동 여부만을 기계적·자동적으로 감지하고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뿐으로,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개념도



[그림 1]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개념도

접근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단수단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과정이나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에 관하여 통지하는 것도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17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헌법 제 17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요컨대 헌법 제 17 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 헌마 402 결정).



그런데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이상의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 사건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별도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을 문제삼으며 침해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거시한 사안에서, “위 기본권들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들로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 헌마 513, 2004 헌마 190(병합)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차단수단 삭제 여부를 파악해서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로 고지’를 하므로 청구인 1, 청구인 2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고 동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이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침해여부를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청구인 1, 청구인 2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없으며 그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2)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여부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속정보, 위치정보, IP 주소, 로그기록 등 스마트폰 사용정보를 수집·보관하며,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합니다.

(나) 우선, 스마트폰의 이용 계약 체결 시 정보통신망법 제 22 조 제 1 항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 또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앱 개발사가 청소년의 IP 주소 등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 보관하며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차단앱은 아래 세 가지 종류¹⁾이며, 이동통신 사업자 혹은 앱 개발사가 청구인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차단앱 제공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범위

어플명	주요기능	비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보관되는 개인정보	
				청소년	법정대리인
T청소년 유해차단 (SKT)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행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올레 자녀폰 안심프리 (KT)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유해정보 차단/고객 민원 응대	전화번호/단말기 MAC Address	없음
자녀폰 지킴이 (LGU+)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유해정보 차단/고객민원응대	전화번호/단말기 MAC Address	없음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첨부자료 1에 따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 현황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앱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앱 중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앱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자료입니다.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차단수단의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됩니다. 특히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을 이행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는 앱 개발사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부²⁾ 앱 개발사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 22 조 제 1 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IP 주소 등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 보관하며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사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앱 개발사들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 다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앱의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서, 이 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정보통신망법 기타 관계 법령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³⁾.

- 2)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와 차단수단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맺은 앱 개발사 중 일부만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만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앱 개발사는 이를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 3) 청구인이 예로 들고 있는 ‘사이버안심존’ 앱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스마트안심드림’ 앱은 사이버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의 일환으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청소년의 알 권리 제한 여부

청구인들은 필터링 기술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정검열을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규제 문제점으로 인해 유해정보가 아닌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청소년인 청구인 1, 청구인 2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여기서 ‘일반적’이란 신문, 잡지, 방송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정보’란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 헌마 638 결정).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하며, 이는 동항 제 1 호에서 말하는 음란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는 청소년의 이용이 법적으로 불가한 정보로서, 위 판례에 의할 때 청소년의 입장에서 “모든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 즉 “신문, 잡지, 방송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의 알 권리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들에 의해 분류되는 불법·유해정보의 광범위성 또는 ‘유해정보가 아닌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될 가능성’과 관련된

청구인들 주장은 비단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제도⁴⁾ 자체의 타당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알권리의 제한은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청소년의 알권리를 새로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 헌마 894 결정).

(4) 부모의 교육권 제한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차단수단의 제공의무를 부과하면서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청소년의 부모인 청구인 3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일률적으로 부모의 교육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부모에게 차단수단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부모가 요청한 경우 차단수단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에게 차단수단을 삭제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4) 한편, 법원은 ‘음란’에 대한 객관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기술방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도 3558 판결), 헌법재판소도 음란물로부터 사회의 성도덕을 보호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 109, 2007헌바 49, 57, 83, 129(병합) 결정).

또한, 부모의 교육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제 36 조 제 1 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바,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 조 제 1 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10 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 37 조 제 1 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면서, “특히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 31 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9. 10. 29. 선고 2008 헌마 635 결정).

청구인은 단순히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법정대리인에게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동통신 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 이후 이를 청소년의 휴대폰에서 제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고, 위 헌법재판소 판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의 의미보다는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한 기본권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을 통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 한 것은 ‘자녀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부모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 36 조 제 1 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취지와 그 맥을 같이하여 오히려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청구인 3의 교육권을 제한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의 부당성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교육권이 제한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이 시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단의 적합성

청구인들은 ①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이동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차단수단을 강제 설치하게 한 후 삭제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고 있고, ② 차단수단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기능 등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③ 차단수단 중 일부가 보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지속적으로 차단수단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 부모가 요청한 경우 사후 삭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고,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의 기능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적 부가서비스로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의해 강제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동 서비스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위헌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보안 위협도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즉,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안 위험을 근거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위헌성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참고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스마트보안관 사례에 대해 언급하자면, 스마트보안관은 MOIBA(“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와 이동 3사가 '12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SW로, MOIBA가 개발·운영하던 SW를 정부차원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공익목적의 보편적서비스로 보급하기 위하여 '13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스마트보안관 앱’에 대해 시티즌랩이 '15.9.20 보안취약점을 발표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식별방지를 위한 암호화, 통신보안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라 합니다)의 보안성 평가를 통해서도 재차 미비점 보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15.10월)⁵⁾. 청구인들은 '15.11.1 발표한 시티즌랩의 2차 보고서를 근거로 스마트보안관 앱의 기존 문제들이 다수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2차 보고서는 보완이 완료된 버전(당시 1.7.8)이 아니라 구버전(1.7.7)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으므로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MOIBA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보급하고 있는 사이버안심존 앱에 대해서도 KISA 보안성 평가를 완료('16.9월)하는 등 보안취약점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강화 노력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느 SW를 보급하더라도 필요한 조치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5) 다만 스마트보안관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 시행 이후 이동통신 사업자가 차단 앱을 무료로 보급함에 따라 중복 예산 방지 등의 이유로 '15.11월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침해의 최소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① 이동통신 사업자가 차단수단에 대해 안내하고 설치 여부는 청소년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만으로도 입법목적 실현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차단수단을 강제 설치하게 하고 차단수단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점, ②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필터링만 하는 소프트웨어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가 큰 방안을 강제하는 점 때문에 침해의 최소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는 차단수단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차단수단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한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일회적으로 차단수단을 제공하면 될 뿐 청소년이 차단수단을 설치한 후에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이 차단수단을 임의로 삭제 시 이러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이동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차단수단을 제공한 뒤 이를 이용자가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차단수단의 삭제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차단수단을 제공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추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소년의 불법·유해정보 노출의 심각성 및 규제의 필요성

아래와 같이, 현재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앱 또는 웹사이트)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되는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⁶⁾

경찰청에 의하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하여 영리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상습 제작·배포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7,647 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면

6) 참고자료 1. 장지훈 기자, “[스마트폰 늪에 빠진 10대] 음란물 홍수에 청소년 무방비 노출”, 온포커스뉴스 2016. 6. 24.자 기사, 정유미 기자, “‘아이 미래 뺏는 스마트폰 음란물 막아야’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씨 호소”, 경향신문 2015. 5. 26.자 기사

웹하드와 P2P 를 통한 음란물 심의 건 중 시정요구를 받은 음란물은 2011 년 999 건, 2012 년 2,659 건, 2013 년 3,147 건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5 년 불법·유해정보로 결정된 웹사이트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모바일 웹사이트 접속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5 년 상반기 동안 트래픽이 관찰된 유효 모바일 웹사이트는 6,562 개로 밝혀졌으며, 모바일 웹사이트 불법·유해정보는 PC 웹사이트 불법·유해정보에 비해 6% 높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어,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유해정보의 이용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유추되며, 이 중 음란/선정성 정보 사이트들이 높은 접속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불법정보 사이트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설문에 대하여, 10-18 세의 청소년이 ‘용이하다’고 답한 비율은 49.7%인데 반하여, 이를 부정한 비율은 16.8%로, 청소년의 모바일을 통한 불법정보에의 접근 용이성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7)

더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 년 스마트폰 앱 오픈마켓 내 불법·유해정보 유통실태를 조사에서 sex, porno, nude, penis 등과 같은 음란·선정성 관련 특정 단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2,572 건이 발견되었고 1년 후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동일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101 건이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8)

7) 참고자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보고서”, 2015. 12., 32~39 면, 48~49 면.

8) 참고자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마트폰 오픈마켓 불법·유해정보 현황 및 국내외 규제정책 비교 연구”, 2013. 12., 132 면.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31.6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⁹⁾.

게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3년에 분석한 3,628 건의 불법·유해정보 앱(다운로드 횟수가 50 건 이상인 앱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함) 중 많은 앱이 연령등급이 부여되지 않았거나(1,332 건) 4세 이상 전체 이용 가능 등급(29 건)으로 부여된 경우도 있었고, 연령등급 안내문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1,546 건), 유해성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1,383 건)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앱이 연령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¹⁰⁾

마지막으로 불법·유해정보를 포함하는 앱의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하는 앱이 압도적으로 높는데(78.4%), 이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¹¹⁾으로, 청소년이 이러한 앱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존 규제의 한계점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함) 등을 통하여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규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9) 참고자료 4. 이인용(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2012. 6. 22.) 검토보고서”, 2013. 6., 5 면.

10) 참고자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보고서, 68~73 면.

11) 참고자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보고서, 85~88 면.



바와 같이 동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의미를 구체화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의무(청소년보호법 제 13 조), 포장의무(동법 제 14 조),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 금지의무(동법 제 16 조), 구분 격리(동법 제 17 조), 방송시간 및 광고 선전의 제한(동법 제 18 조, 제 19 조) 등 유통에 관하여 다양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법 제 21 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동법 제 32 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규제는 모두 불법·유해정보의 공급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이므로 해외 공급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해외 공급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SNS, 랜덤채팅앱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 유형에 맞추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공급자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최종적인 접촉 단계에서 기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관련 규제의 맹점이었던 해외



공급자로부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급자로부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조치로서, 국내의 기존 제도들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다) 차단고지 외 다른 실효성 확보방안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상의 차단고지 방안 외에 ① 이동통신 사업자에 차단수단의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② 청소년이 차단수단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로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① ~ ②의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① 방안과 같이 사업자로 하여금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여부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할 수 있고,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방안을 도입할 경우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위와 같은 방안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¹²⁾

이와 같은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 사업자에 차단수단 설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점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12) 참고자료 4. 이인용, 위 보고서, 10~12면.



조항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다른 방안에 비하여 그 규제의 정도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 소결

현재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¹³⁾과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취볼 때 청소년이 불법·유해정보에 최종 접촉하는 지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 기존의 국내 규제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은 강구 가능한 다른 방안보다 그 규제의 정도가 덜하면서도 실효성 높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강제적으로 차단수단을 사용해야 함으로써 받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및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13)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가구원 10명 중 8명(85.0%)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자료 5.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7. 1., 6면.)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우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제한받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게 되는 공익보다 더 크므로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제한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법정대리인에 통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청소년의 올바른 정신적 성장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볼 때 결코 적지 않은바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둘째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앱 개발사 등 사업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하고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청소년 및 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정도가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강제되는 것은 차단수단의 제공일 뿐, 이를 통하여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앱 개발자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제공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상의 앱들이



작동시 요구되는 정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를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앱개발사가 수집 또는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외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앱개발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속정보, 위치정보, IP 주소, 로그기록 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수집하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청소년의 알 권리가 제한되며 이러한 알 권리의 제한으로부터 오는 해악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공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서 청소년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외 다른 합법적 정보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부터 차단될 가능성에 대한 주장 부분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위헌성이 아닌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음란물 심의제도의 위헌성 또는 문제점을 다투는 부분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설령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합법적 정보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은 잠재적인 것으로서 증명된 바



없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이 청소년 사이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과 같이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이 청소년의 알 권리의 제한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넷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① 설치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② 설치 이후에는 차단수단을 삭제할 권리와 통지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모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자녀를 교육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자녀를 보안위험에 노출시키는 수단을 용인해야 하므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만으로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이런 중대한 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차단수단을 삭제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통지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어떠한 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오히려 부모에게 교육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임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습니다. 가사 부모의 교육권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은 ‘차단수단 설치 시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뿐인데,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한 일률적 차단수단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한 일회적 차단수단 설치 이후 부모의 교육권 행사를 통해 차단수단이 부모의 의사대로 삭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부모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는 차단수단 설치 시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 부모의 교육권 제한에 비해 월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위임입법 한계 이탈 주장의 부당성

(1)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이동통신 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 제 3 항에서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는 바, ① 이 때 ‘제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②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 부분에서 ‘음란’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아래와 같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75 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6헌바22 결정 등),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결정 등),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헌재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결정).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문구 중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란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을 감안하면 대부분 스마트폰

이용계약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의 어떠한 정보의 ‘차단수단’이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는 방법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음란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중 한 방식인 ‘청소년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방식’도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으로부터 명확히 도출되는 차단수단 제공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음란’에 대한 객관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그 차단 대상이 되는 ‘음란물’(정보통신망법 44 조의 7 제 1 항 제 1 호)의 용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 도 3558,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음란정보의 차단’ 부분 또한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한 위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 중 법률조항은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폰 관련 기술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차단수단의 제공’은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에 해당하고 그 불이행시 예정된 법적 제재가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 92 조)뿐으로 경미한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에 요구되는 정도로 엄격하게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욱 그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2001. 1. 16. 법률 제 6360 호) 제 42 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오늘날 전기통신이나 인터넷 기술의 빠른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그러한 정보의 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면서 해당 위임입법 규정이 “표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동 조항의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 894 결정, 이하 “2001 헌마 894 결정”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도 법률에서 차단수단으로써 차단되어야 하는 대상과 차단수단 제공의무의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 중 법률조항은 그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위임입법 한계 이탈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제 2 항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를 하고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 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수권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인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제 75 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배한 위임명령은 위법이라고 평가되며, 여기에서 모법의 수권조건에 의한 위임명령의 한계가 도출된다. 즉, 모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고 실시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 헌마 273 결정 등).



또한 대법원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본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 두 13637 판결).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대통령령에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고, 그 입법목적은 사업자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의무 부여를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차단수단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① 만일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동통신 사업자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시 제대로 동 차단수단이 설치되지 않을 우려가 높아 실효성 있게 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차단수단 제공의무에는 설치 여부 확인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 의무는 지속적인 설치 확인 의무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더욱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② 만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차단수단을 일회적으로 제공하기만 할 뿐 계약체결 후에 청소년이 곧바로 차단수단을 삭제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청소년은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모의 친권의 대상으로서 교육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은 법정대리인의 교육적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고 제도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로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특정 소프트웨어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365일 24시간 동안의 상시적 감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단 앱은 기계적·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이동통신 사업자나 앱 개발사는 청소년이 검색한 불법·유해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건과 유사한 위 2001 헌마 894 결정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 17344 호) 제 21 조 제 2 항의 경우 “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임입법 내의 규정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 중 시행령조항

또한 스마트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법률상 정해진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고 차단수단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 차단수단의 작동 중지 시 이를 부모에게 고지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 중 법률이 정하고 있는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 내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은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불여지가 없는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분명한 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1 장지훈 기자, “[스마트폰 늪에 빠진 10대] 음란물 홍수에 청소년 무방비 노출”, 은포커스뉴스 2016. 6. 24. 자 기사, 정유미 기자, ““아이 미래 뺏는 스마트폰 음란물 막아야”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씨 호소“, 경향신문 2015. 5. 26. 자 기사

1. 참고자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보고서”, 2015. 12. (발췌본)
1. 참고자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마트폰 오픈마켓 불법·유해정보 현황 및 국내외 규제정책 비교 연구”, 2013. 12. (발췌본)
1. 참고자료 4 이인용(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2012. 6. 22.) 검토보고서”, 2013. 6.
1. 참고자료 5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7. 1.

2017. 2. 23.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욱

담당변호사 장준영

담당변호사 강현정

담당변호사 박규홍

담당변호사 남한결



담당변호사 이 민 영



담당변호사 최 유 리



헌법재판소 귀중

